구분 관련규정 공제금 내역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§12의3 ∙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중 기술가치 금액의 10%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§12의4 ∙ 주식 등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%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특법§19 ∙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 성과급의 15%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§24 ∙ (공제대상) ① 사업용 유형자산(단, 토지･건물, 차량, 비품 등 제외), ②일부 유형자산(①제외)과 무형자산 ∙ (공제방식)기본공제(1/3/10%)＋추가공제(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× 3%) ∙ (신산업 지원 강화) 신성장･원천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%p 우대 ∙ (국가전략기술 지원) 신성장･원천기술 기본공제 대비 + 3~4%p 상향, 추가공제 1%p 우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조특법§25의6 ∙영상콘텐츠 제작금액×3%(중견 기업 7%, 중소기업 10%) \* 공제시기：방송･영화상영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§29의3 ∙ 중소･중견기업이 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 × 30% (중견 15%) \* 2015.1.1.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조특법§29의3 ∙ 중소･중견기업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 (남성포함)에게 지급한 인건비×30%(중견 15%) \*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,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§29의4 ∙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× 5% (중견기업 10%, 중소기업 20%) ∙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 증가액의 합계 × 5%(중견기업 10%, 중소기업 20%) \*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적용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§29의7 ∙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아래 금액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그 외 상시근로자 700 770 450 450 - - 청년정규직, 장애인근로자 등 1,100 1,300 800 900 400 500 \*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대기업 2년, 중소･중견기업의 경우 3년 적용